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91

발의연월일: 2025. 5. 13.

발 의 자:임광현·이정문·박해철

김문수 · 김영진 · 강득구

김영환 · 정일영 · 김병기

이병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.

그런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 임(안 제87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2항 본문 중 "세대주의 배우자(이하 이 조에서 "세대주등"이라 한다)가"를 "세대원(이하 이 조에서 "세대주등"이라 한다)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 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87조제3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년우대형주택청 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 - ③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이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) ① (생 략) 대한 소득공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 용근로자는 제외한다)로서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주의 배우자(이하 이 조에서 원(이하 이 조에서 "세대주등" "세대주등"이라 한다)가 2025년 이라 한다)이-----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에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청 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(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, 제 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 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 액만 해당한다)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. 다만, 과세기간 중에 주 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	
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	
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	
다.	
③ ~ ⑪ (생 략)	③ ~ ① (현행과 같음)